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7. 7.

발의의원 : 이성오, 김대현,
김원규,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윤권근, 이재숙,
조경구의원
(9명)

1. 제안(개정) 이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국기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시장의 책무 및 국기의 게양일 등을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기의 점검·관리 사항 및 표창을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규정 :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계양)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의 제목“(국기보급)”을“(국기 보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기보급 확대”를 “국기 보급 확대”로, “국기보급 사업”을 “국기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사업”을 “국기 보급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국기선양사업)”을“(국기 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를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로, “국기선양사업”을 “국기 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국기선양”을 “국기 선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 “국기선양”을 “국기 선양”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시행규칙)”을“(국기의 점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국기를 계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구시가 출자·출연을 통해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기(市旗) 등”이란 대구시기, 대구시교육청기, 대구시 구·군기, 새마을기, 산하기관기 등 평상시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를 말한다.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국기교육을 통해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4호의 날
2. 제1항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시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보급) ① 시장은 국기보
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
----- 국기 보급
확대----- 국
기 보급사업-----.

<삭 제>

② 국기 보급사업 추진-----
-----.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국기 선양사업) ① --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 국기 선양사업-----.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기 선양-----

② 국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 ----- 국기선양-----

제8조(국기의 점검·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국기·깃봉 및 깃대를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 계 규 정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계양일 등) ① 국기를 계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계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계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계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계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계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계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

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 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